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규정에 따라,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거푸집"이란 부어넣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,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합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을 말한다.
- (나) "동바리"란 타설 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및 장선·멍 에를 적정 위치에 유지시키고,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다) "거푸집 널"이란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 판류를 말한다.
- (라) "장선"이란 거푸집널을 지지하고,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마) "멍에"란 장선을 지지하고, 상부하중을 동바리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